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0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2021. 9. 8.(수)

검 토 안 건	발 의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춘주)

검 토 보 고 서

(보고자 : 전문위원 박춘주)

1. 검토안건

- 안전명 :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제출경위

- 제출자 : 마포구청장
- 제출일 : 2021. 8. 27.
- 회부일 : 2021. 8. 31. (의안번호 : 21 - 92)

3. 제출이유

주거기반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인 마포형 케어안심주택의 운영사무를 역량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마포구의회를 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가칭)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운영사무

나. 민간위탁 내용

- 1) 위탁기간 : 3년
- 2)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 : 케어안심주택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3) 위탁시설 개요

가) 위 치: 마포구 아현동 282-20, 16, 19

나) 시설규모 및 세부사항

대지면적	271.69㎡	
연면적/건축면적	999.33㎡ / 114.32㎡	
용적률/건폐율	353.15%/42.08%	
건물규모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용도	오피스텔(12호), 다세대주택(11호) 근린생활시설(1호), 커뮤니티실(1호)	
주차대수	8대	
지구특성	준주거지역(애오개역217.2m, 아현역 299.5m)	
사업자	자선금영 건축사(대표 조성탄) / 02-385-2088	
준공예정일	2022. 4월	

※ 내공사 주택 확보 후 마포구 임대(주거공간 제외 무상임대)

4)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5) 소요예산 : 82,600천원(구비 100%)

- 최초년도 설치비: 64,500천원

- 연간 소요액: 18,100천원

(단위:천원)

합계	설치비(최초년도 소요예산)				사업비 (운영비)	기타 (업무추진비)
	소계	임시거소시설	커뮤니티시설	근린생활시설		
82,600	64,500	44,000	11,500	9,000	17,800	300

다. 세부추진일정

- 운영기관 선정 방침 수립 및 공개모집 : 2021. 12.
- 운영기관 선정 : 2022. 1.
- 주택계약 및 입주대상자 모집 : 2022. 4.

5. 관계법령

가. 주거기본법 제3조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 제9조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26조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인구구조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통합 돌봄을 위해 설치되는 마포형 케어안심주택의 운영과 관리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임.
- 위탁운영 시설은 (가칭) 마포형 케어안심주택으로 위탁 기간은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위탁사무의 범위는 케어안심주택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로,
 - 마포형 케어안심주택은 노인인구 및 1인 가구 증가, 가족돌봄 기능 약화 등으로 주거와 돌봄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상자에게 주거 기반 맞춤형 돌봄서비스(소통돌봄, 건강돌봄, 일상돌봄)의 제공과
 -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일시돌봄과 주거공간이 필요한 대상에게 임시거소공간과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임.

-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위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근거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민간위탁이 적합한 사업으로,
- 케어안심주택 운영에 있어서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대상자들을 법의 취지에 맞게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돌봄을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자료

1.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운영 개요
2. 관계법령

참고자료 1.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운영 개요

□ 운영방향

- MH마포하우징 확장형 주거사업 : 주택공급 + 돌봄·의료서비스 제공
- 마포형 모델 개발
 - ① 세대통합 주택: 노인·장애인·중장년·한부모·청년 등 다양한 세대 구성
 - ② 서로돌봄/상시돌봄이 가능한 주택
 - ③ 일거리가 있는 주택
 - ④ 주거와 임시거소(중간집) 통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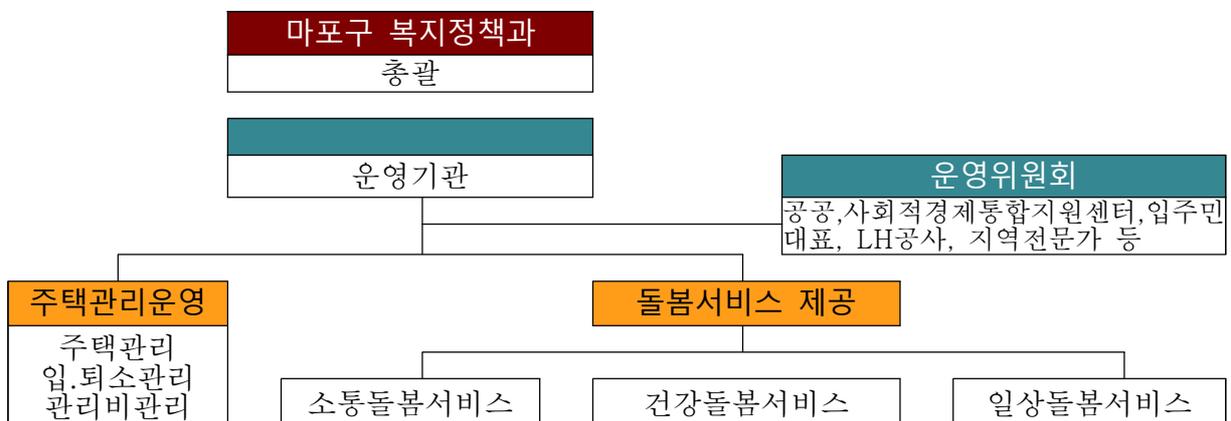
□ 사업대상: 주거 기반 돌봄이 필요한 가구

- 내공사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충족하면서 일상돌봄 및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자
- 퇴원, 부상, 가정폭력 등 위기상황으로 주거를 기반으로 한 일시적 돌봄(회복지원)이 필요한 자(임시거소공간)

□ 사업내용

- 주거 기반 맞춤형 돌봄서비스(소통돌봄, 건강돌봄, 일상돌봄)를 제공하여 시설이 아닌 살던 곳(마포)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인 일상생활 지원
-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과 거주자 신체조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 설계 및 주택관리
- 병원·시설 퇴원 후 재활 및 일상생활 적응 훈련을 통하여 지역사회(살던 곳) 복귀 지원
- 일정기간 동안 주거와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위기상황(가정폭력, 강제 퇴거 등) 해소

□ 운영체계



참고자료 2. 관계법령

주거기본법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91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23.>

1.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긴급복지지원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78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014. 12. 30., 2018. 12. 11.>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마.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주택의 임차) 구청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이 조에서 “공사”라 한다)와 협약을 통해 공사가 매입한 구 소재의 기존주택 등을 유·무상 임차할 수 있으며, 유·무상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26조(주택의 관리) ① 매입·건설임대주택의 사용·수익을 위한 전반적인 보수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개정 2021.2.4.>

② 매입·건설임대주택의 입주 후 일상 관리는 구청장이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2.4.>